

#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철성 의원 발의)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3444 |
|----------|------|

발 의 년 월 일: 2026년 02월 09일  
발 의 자: 박철성 의원(1명)  
찬 성 자: 김성준, 김원태, 김인제,  
김형재, 남창진, 민병주,  
박승진, 송도호, 유정희,  
윤종복, 이영실, 최민규,  
홍국표 의원(13명)

## 1. 제안이유

- 최근 대규모 지하개발사업이 증가하여 지하수위 변동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, 실제로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사례에서는 터널 굴착에 따른 지하수위 저하가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음.
- 이에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지하수위계 계측 자료를 포함시켜 지하개발 과정에서의 지반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, 이를 통한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지하개발사업에 따른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을 위한 조사 시, 시장으로 하여금 지하안전평가서,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뿐만 아니라 지하수위계 계측 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12조제2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전단 중 “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”를 “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, 지하수위계 계측 자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    행   | 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  |
|---|--|
| <p>제12조(지하개발 사업 등에 의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 등)</p> <p>① (생   략)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법 제14조와 제23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 또는 법 제20조에 따른 <u>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</u>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</p> <p>③~⑥ (생   략)</p> | <p>제12조(지하개발 사업 등에 의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 <u>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, 지하수위계 계측 자료</u>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③~⑥ (현행과 같음)</p> |

#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#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하개발 사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지하수위계 계측 자료를 포함시켜 지하개발 과정에서의 지반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자료의 추가 제출 요구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대상에서 제외함

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     이 선 희

추계세제팀장     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     김 경 명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imkmi0809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**